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 안내

---

1.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793(2020.1.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대학혁신지원대학, 한국연구재단

행정사무관 송성윤 대학재정장학 전결 2020.2.26.  
과장 김태경

협조자

시행 대학재정장학과-599 (2020. 2. 26.)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동) / [www.moe.go.kr](http://www.moe.go.kr)

전화번호 044-203-6612 팩스번호 044-203-6941 / [sy4046@korea.kr](mailto:sy4046@korea.kr) / 비공개(5)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

## □ 추진 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안내(대학학사제도과, '20.1.30.)》

- (대학, 전문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교육, 방역, 학생 격리(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 일체 집행 가능하며, 동 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내·외 프로그램 등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등 집행이 가능

## □ 집행 기준

- (집행 원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 집행
- (집행 가능 항목) ①코로나19 관련 대학 내 현황 파악, 학생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기존 교직원 제외), ②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물품구입 비용 및 용역비(버스 임차, 방역 등), ③동 사업비로 추진 중이던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수수료
- (집행 제한 항목) ①기숙사비(사용료, 임대료), ②식비(간식, 생수 등 포함)는 동 사업비 집행 제한

## □ 행정사항

- 예비비 편성 이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예비비로 지원되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 비용을 제외한 항목으로만 집행(중복집행 불가)

### 《 코로나19 확산 대비 예비비 지원 》

- 지원목적 : 중국인 유학생 관리
- 세부항목 : 관리인력경비, 마스크, 손소독제, 접촉식 체온계(기숙사 및 자가관리), 방역비, 공항 부스운영비

- '20년 사업비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행 가능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전체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기타\* 영역) 프로그램명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내 편성·관리 (1차년도 연차실적 보고서에 반영) \* 사업비 집행 영역 : 교육/연구/산학협력/기타
- 단, 개별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해당 프로그램 내 편성·관리